

一線山林契(山林組合)의 實態 및 契員의 意識 動向*1

鄭 佐 容*2

머 리 말

山林契와 山林組合은 그 基盤이 農山村地帶이고 또 任務內容이 同質적이고 單純 均一 系統化되어있으므로 一部の 概況으로서 能히 全體의 樣相을 部分的이나 類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개 山林組合과 36里洞山林契를 調查하였으나 그 實과 虛를 計數的으로는 勿論 概略의으로도 把握하기가 어려웠으므로 契의 몇개 實態와 契員의 契에 對한 意識의 動向(構造)과 아울러 契員의 林地 利用狀況(自給의 利用)을 調查하였다.

2. 調查方法

地區別로 Ⅰ : 都市(晋州)近郊, Ⅱ : 奧地(山淸郡), Ⅲ : 中都市경제권(晋陽郡), Ⅳ : 海岸(泗川, 固城郡)으로 나누어서 各地區別로 다시 山組自體의 類別에 따라서 平野 中間(農山村) 山間(山村)의 地帶別로 各各 自立 自助 基礎 山林契1個式을 山組에 備置한 카야드를 任意 抽出하여 各契의 實態카야드를 複寫하여 記錄된 實態를 充分히 파악한後에 現地를 調查 하였다.

契의 業務는 主로 契長의 案內와 說明에 의하여 現場을 確認하는 方法을, 意識과 林野利用의 狀況調査는 一契當 家口主 10名式을 主로 戶別訪問하고 設問에 의하여 應答청취 記錄하였다.

調査中 作爲에 의한 同一한 應答은 그 信賴性을 考慮하여 集計에서 버린 것이 있다. 따라서 總應答者 360名 調査契 36개中 前記 Ⅱ와 Ⅲ地區內의 18契의 156名이 對한 것을 爲先 集計하였다(180名中 24名을 비웠고 또 應答中 項目에 따라서 應答을 回避한 項目도 있음). 조사기간은 75.7.20~7.30이었다.

3. 意識의 動向 構造

山林契의 任務中 所謂 有形的인 管理와 外形의인 活

動 參與分野, 契員으로서의 義務條項等 몇개를 추려서 30問으로 應答을 區分하였다. 設問 內容은 契員의 加入과 任務(設문 1~6), 組合費의 納付(7~10, 27~29), 共同出役(11~12, 23), 委託林(13,14) 및 경영(15,16), 燃料林(17~20), 林地保有(21~23), 集會(24), 落葉採取 入山規制(25,26)등으로 되어 있다.

또 各 設問에는 4個의 細項으로 나누어 詳細한 設問書를 作成하였다(設問書는 省略).

地區別, 地帶別로는 大體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總數의 最頻數와 地區, 地帶間에 大體로 同一 傾向이나 다만 地區間에 있어서는 17개項目에 差가 있었고 地帶間에 있어서는 7개項目에 少數 意識差가 나타나 있었다. 契의 類型別로는 그 意識差가 없었으므로 區分하여 集計하지 않았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契員(=應答者)의 60%가 加入初에는 組合의 권유에 의하여 加入하였으나 一部地區와 地帶에는 自進 加入도 많았다. 그 任務內容에 對하는 大體로 懷疑의 이며 60%가 약간 알고 있고 現實的으로 契를 認定할 때는 81%가 긍지를 느끼고 있으며, 이들은 43%가 契의 民主的 運營을 即 全數의 80%가 契의 民主的인 운영과 構造의 改善을 바라고 있다.

또 76%가 契의 새마을組織에의 吸收를 希望하고 있으며, 契를 두나 마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18%, 없애는 것을 원하는 것이 5%이며 全數의 99%가 現存契의 存立에 對하여 否定的이다. 새마을 組織에의 吸收를 바라는 것도 現與件下에서 契의 存續에 對한 改善策으로 나타난 表現이라고 보며 眞意는 없애는 것을 바란다고 看做된다.

契員의 資格은 80%가 現行대로 家口主單位를 바라고 있으며 이것은 多數會員일 경우 會費의 多額納付의 우려에서 오는 單純意思의 表示였다.

한편 山組에 對하여는 45%가 山林施策에 必要한 것으로 43%가 契員을 爲하여 애쓰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향은 Ⅲ地區와 平野中間 山間의 順으로 낮게 나타나 있다.

*1 Present Status and Cognition Trend of Village Forestry Association

*2 Jwa Yong Chung. 慶尙大學, Ky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② 契員의 가장 關心事는 組合費를 할수없이 納付가 51% 當연 納付가 31%이며 Ⅲ地區, 中間 山間 平野의 順으로 낮은 빈도이다. 이들은 또 45%가 組合員이 자주 찾아오니까 納付하며 40%가 會費로서 生覺하고는 있으나 一面 34%는 귀찮은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組合費의 用途에 對하여는 47%가 그 用途를 全然 알지 못하고 있고, 32%가 契와 組合의 育成費로 알고 있다. 또 47%가 組合費를 없애고 目的稅로서 林野稅를 賦課하여 組合費代로 充當을, 29%가 山主만이 納付를 바라고 있다 또 山組의 出資組合式等的 改編에는 53%가 全然無關心이며 無條件 出資意志의 表示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③ 共同出役은 86%가 共同利益上 必要하다고 느끼며 이들은 53%가 實에서 권유하여, 37%가 組合과 主로 契長의 권유로, 極히 少數인 8%만이 스스로 判斷하여 出役하고 있으며 造林作業이 가장 必要한 共同作業으로 보고 있다.

④ 山主로서의 契員의 立場은 壓倒的인 96%가 스스로 保有山을 經營하기를 94%가 委託시킨 生覺이 없으며, 部落委託林에 對하여 82%가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86%가 契員이 共同關心을 가져야 格영이 잘된다고 보고있다. 그저 그렇게는 一種의 責任 回避의 으로 委託林失敗의 現狀에 對한 隱蔽的인 無關心한 應答이었다.

⑤ 過去 造成한 燃料林에 對하여는 86%가 흔적만을 일부 남아있다고 實態를 認定한것이 89%이며 이들은 大部分 失敗를 認定하고 있으며 또 54%가 燃料林의 個別管理를, 37%가 擴大를, 그 價値에 對하여는 58%가 큰 利益을 주고 있다고 判斷하고 있으며 38%가 觀望的인 懷疑的인 心情이다.

⑥ 林地를 購入한다면 그 動機에 있어서는 42%가 特用樹種을 植栽하기 爲하여, 또 42%는 農用林 燃料林을 造成하기를 願하고 있으며, 墓地確保를 爲하여는 0.6%만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山村地帶는 32.7%가 墓地設定을 目的으로 바라고 있는 反面 中間地帶는 2%에 不過한 것은 地帶間에 保守와 變革의 意識의 큰 差를 表示한다고 할 수 있다. 林地利用에 있어서는 經濟性 爲主로 營農과 直結되어 있으며 이들은 또 39%가 林地保有의 擴大를, 58%가 積極管理하겠다는 心情이며 所有山에 對한 積極的인 意欲이 나타나고 있다.

⑦ 落葉採取等은 45%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며, 中間地帶는 8%가 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며 一面회의의 이나 其外의 地區, 地帶는 肯定的으로 높은 頻度를 보였다. 또 41%는 全然 없어졌다고 인식하며 平野,

山間 Ⅲ地區 Ⅱ地區 中間의 順으로 높아지고 있으며가 根絶이 어렵다고 하였다.

入山行爲의 規制는 45%가 더욱 완화를 43%가 現在 對照를 바라며 이 傾向은 地區 地帶別로 大體로 同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落葉採受를 12%는 씩조금 하고 있으며 山村은 2%인 反面 中間은 20% Ⅱ地區는 16%式 採取의 一部存續을 보여주고 있으나 入山의 規制와 함께 이 政策은 成功的이라고 할 수 있다.

⑧ 契, 組合의 發展策에 對한 多數意見을 설문30에 略記하였다.

4. 山林契, 山林組合의 概況

① 組織 74년 현재 山聯산하 9개道支部에, 141개 山組, 21,295山林契에 契員 2,326千名이며 組合當 平均 151 山林契에 契當平均 109名의 契員이며, 契員中 山主가 32%인 785千名, 非山主가 68%인 1,540千名으로 集計되고 있으며 이것은 全國里洞數 17,593 農家口數 2,450,277(73현재)와 對比하면 都市地域의 一部 農家를 除外한 全農家와 農山村 居住의 一部 班農家도 總량과한 外面上의 完璧한 組織體系라고 할 수 있다. 山村, 中間地帶의 山林契가 全體의 約 73%, 平野地帶가 19%를 차지하고 있다.

② 管理: 全國 141개山組의 75년 現員은 組合長을 包含하여 1,242名, 組合當平均 8.8人, 全國의91郡 1,376面과 對比하면 1人當 1.1邑을, 다시 組合長과 常務를 除外한 實務職員 812名(타자용원 除外)을 기준하면 1人當 1.8邑面을 擔當하고 있는 셈이다. 全國山林契에 對하여는 組合長包含 1人當 17契를, 實務職員 1人當 26契를, 契當平均契員 109名이며 實務職員 1人當 約 2800名을 分擔하고 있다. 職種別로는 組合長 常務의 管理職이 約 23%(281名), 主事 書記의 事務系가 16%(196名), 技士 技員의 技術系가 24%(297名), 나머지 37%는 囑託, 指導員, 傭員으로 되어 있다.

人件費의 組合當平均은 74년도 2,723千원, 75년도 4,124千원이며 職員1人當 年平均 給與는 304千원(74년) 468千원(75년)에 머물고 있다.

③ 財政: 75년도 山聯산하 財産의 總評價 3,426百萬元中 山組가 34%인 1,181百萬元, 山林契가 51%인 1,747百萬元으로 集計되고 있다. 이것은 組合當平均 8.3百萬元, 契當平均 8.2萬원이며 山林組合中 自體廳舍保有가 99, 未保有가 42組合으로 約 30%가 有關機關의 廳舍를 빌려 쓰고 있다.

75년도 山組豫算은 表 I과 같으며 收入中 經常的인

表 1. 1975년도 산림조합예산(141개조합 총괄)

단위 : 백만원

수입				지출			
과목	예산액	구성비	과목	예산액	구성비		
계	4,654	100%	계	4,654	100%		
보조금	310	6.7	기관운영	747	16.1		
부담금	848	18.2	지도사업	295	6.3		
사업수입	765	16.4	사업비	2,780	59.7		
사업비선수금	2,102	45.2	재산조성	317	6.8		
재산수입	84	1.8	적립금	87	1.9		
차입금	228	4.9	상환금	83	1.8		
과년도수입	234	5.0	과년도지출	40	0.9		
이월금	74	1.6	운대비	1	0.0		
잠수입	9	0.2	예비비	304	6.5		

것은 組合費인 負擔金과 財産收入의 20% 뿐이며 收入의 大宗으로 45%를 占하는 事業先受金은 一種의 借入金으로 不安定한 計定이다. 注目의 對象은 負擔金(組合費)인 18.2%인 848百萬元이며, 한편 支出에서는 契員에게 直接 連關이 있는 指導事業費가 6.3%인 294百萬元이고 組合費의 20~30%를 契의 基盤事業으로 還元하고 있는 償還金이 1.8%인 83百萬元이며 實質적으로 契에 對한 것은 指導費와 償還金を 合하여 支出의 8.1%인 388百萬元 뿐이다. 契員은 848百萬元을 納付하여 83百萬元을 契에 還元받고 있는 셈이다. 支出의 大宗은 事業費로서 全支出의 59.7%이며 組合當 平均 事業費는 23百萬元이다. 收入計定中 事業先受金과 借入金を 合收入 2,324百萬元에 對한 組合費인 負擔金의 比重은 實로 36%에 이르고 있으며 經常收入財源이 貧弱한 不定한 財政規模이다.

④ 運營(74년 현재) : 141組合中 自立이 27%(39), 自助가 59%(81), 기초가 14%(21), 向上된 組合이 48, 下落된 組合이 8,로 自體分析의 結果로 나타나 있다.

組合의 運營費의 自給狀況은 全組合의 自體收入 423百萬元中에 養苗收入이 全體의 65%인 275百萬元, 造林收入이 10%, 副産物收入이 14%, 其他가 11%로 構成되어 있으며 養苗收入이 壓倒的이다.

한편 全組合의 運營費 630百萬元中 人件費가 55%, 事務費가 25%, 經費가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運營費의 自給率은 71년의 37%, 72년 38%, 73년 68%, 74년에 67%로 外形으로는 顯著的 伸張率을 보이고 있어 運營은 財政上 많이 改善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山林契 育成事業(還元事業)과 組合費 :

組合費는 少額이나(75년도, 경남은 年 400원) 그 徵

收에는 적지않은 難點이 있으며 어느 組合의 경우 職員出張의 80%는 組合費 徵收에 消費되고 있다는 實情이다. 對象者가 넓게 與地까지 分布되어 있고 納期도 一定한 期間이 없이 年中 隨時로 便宜的으로 好意的의 協調에만 期待할 수 밖에 없는 形勢이다. 따라서 그 徵收率도 組合에 따라 30~90%까지의 變動을 보이고 있다. 74년도의 徵收額은 全國平均 80%이다.

還元事業의 74년도 實績은 總 142百萬元 가운데 다음과 같이 細分되어 있다. 徵收額의 28%가 還元事業費로 充當되었으나 組合에 따라 20~30%의 幅을 보이고 있다. 契當平均 6700원이다.

a) 資本의 支援事業이 28%인 40百萬元이며 그 內容은 苗木分讓이 40百萬元中의 27%인 11百萬元, 契有林造林이 17%인 6.8百萬元, 養苗가 18%인 7百萬元, 杉나무高接이 13%인 5百萬元, 其外 貸付林 造林등 造林 養苗事業에 約 78%를 投資하고 있으며 其他 若干의 林地와 圃地의 購入施設과 機資材의 支援等 12件에 이르고 重點은 造林과 養苗 事業이다.

b) 經常的 支援事業이 14%인 20百萬元이며 其中 契長手當이 50%인 10百萬元, 巡山服裝에 15%인 3.2百萬元, 其他 契旗 看板 標柱 帳簿 藥劑 害蟲買土 契田改良等 10件이며 契長手當의 支給이 主事業으로 되어 있다.

c) 運營指導事業이 58%인 82百萬元이며 이 가운데 山主大會에 41%인 34百萬元, 運營指導에 19%인 15百萬元, 褒賞에 9%, 山林誌普及에 9%를 其他 要員教育 刊行物普及 啓蒙宣傳等 9件이며 山主大會 開催와 刊行物等の 普及게몽이 主事業으로 되어 있다.

이 還元事業은 62~74년까지 753百萬元이 投入 되었

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契의 將來 期待되는 基盤造成 事業은 a)의 資本的 支援事業 뿐이다.

5. 山林組合, 山林契 事業等の 實態

組合과 契의 實態는 카아드에 整理記錄되어 있어 概況은 알 수가 있으며 前者의 것은 道支部 山聯에까지 備置되어 있고 後者の 것은 當該山組에만 備置되어 있었다. 一線山林契는 契의 標識看板은 全然 찾을길이 없 고 다만 契長은 빠짐없이 組合費納付 領收證綴單은 共

通的으로 保管하고 있었으며 洞長이 兼하고 있는 契長은 林野臺帳 및 圖面等을 常備하고 있었고 其他의 活動參考資料는 近年의 것은 새마을資料의 一環으로 把握할 수 있고, 過年の 것은 口述과 記憶力에 低存할 수 밖에 없었다. 契長은 里洞事情에 밝으며 過去實施한 林業事業도 精通하고 山林의 現況도 거의 알고 있었으며 또 面長室에는 契의 現況이 잘 記錄되어 있었다.

① 養苗 :

山組의 直營事業中 가장 安定되고 自體運營의 寄與度가 높은 事事이다. 表 2 과 같이 治山綠化計劃 實施

表 2. 年차별 양묘사업지정량(성·유묘)

단위 : 백만본

사업자별	년 도		'70		71		72		73		74		75		계	
				%		%		%		%		%		%		%
나	울		—		—		—		—		277	31	314	34	591	14
산	림	조	215	29	165	27	131	22	209	37	204	23	186	20	1,110	26
임	업	시	3	1	2	1	6	1	7	1	15	1	12	1	45	1
업		현	509	70	434	72	458	77	277	49	334	37	334	37	2,345	54
영	림	선	—		—		—		71	13	73	8	75	8	219	5
학		교	—		—		—		0.1	—	—	—	—	—	0.1	—
계			727	100	602	100	595	100	563	100	903	100	921	100	4,310	100

後 마을素若의 急速한 伸張과 相對的으로 企業者 養苗의 激減과 山組養苗의 漸減勢로 나타났다. 實績은 75년에 全數量의 20%, 6年間에 全數量의 26%에 머물고 있다. 過去 山組合養苗의 一部失敗와 劣惡苗生産의 批難, 技術 장비, 施設의 後進과 未備等 山組로서 改善의 餘地가 많을듯하며 現段階에서 養苗의 擴大만이 自立度提高의 가장 安全하고 빠른길임을 前述한 바와 같이 自體收入의 65%가 養苗收入으로 充當되고 있음에 立證될 수 있다.

山林契의 外形의 事業中 가장 重點的인 것은 燃料林

造成事業과 委託林 管理事業이다.

② 燃料林 : 72년도 實態調査 나타난 結果에 의하면 (表 3 참조) 75년 現在 政策目標인 戶當 0.5ha 式 總 120萬ha의 72%인 864千ha를 達成하였으나 實存面積 516 ha는 造成面積 864 ha에 對하여 60%, 目標面積에 對하여 43%가 殘存하고있다. 72년 정비結果는 實로 72년까지의 造成面積 784千ha의 44%인 348千 ha가 不足事由로 나타났다. 不足事由의 49%는 失敗地로 分析되고 있다(表3), 造成面積 864千ha에 對한 40%인 348千 ha가 75년 현재 不足面積으로 되어 있다.

표 3. 연료림 조성실적(전국)

년 도 별	조 성 면 적	현 존 면 적	부 족 면 적	비 고
59~72	784천 ha	436천 ha	348천 ha	72년도 실태조사 결과임
73	10	10	—	보조 8,000 ha, 지방비 2,000 ha 적 10,000 ha
74	30	30	—	보조 25,000 ha, 국특 5,000 ha
75	40	40	—	보조 35,000 ha, 지방비 5,000 ha
계	864	516	348	

※ 부족사유...개간 22천 ha (6%)
 목야지 6 "
 타용도제조림 37 " (11%)
 실패지 167 " (49%)
 기타 116 " (34%)

표 4. 燃料林實績(調查地의 集計)

조사 번호	년도 62 까지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계		
														조 립	무 육	비 배 관 리
1																
2						撫1.00										1.00
3			5.00			撫1.00								5.00		1.00
4				10.00										10.00		
5			5.00			撫2.00								5.00		2.00
6																
7																
8					5.00									5.00		
9																
10,12						36.5		撫 30.00 (肥25.00)	撫8.00	撫 30.00	11.05		20.00	67.50	68.00	25.00
11					12.05	14.00		撫 17.00 (肥25.00)		撫 15.00				26.05	32.00	25.00
13,14					60.08	21.13		撫 26.00 (肥39.00)		撫 23.00				81.21	59.00	39.00
15						63.00		撫 20.00						63.00		20.00
16										撫 10.00			20.00	20.00		10.00
17										撫 5.00						5.00
18																
19	58.53		30.00				29.00							117.53		
20			10.00											10.00		
21						24.52								24.52		
22	50.00			11.00		10.00	5.00							76.00		
계	108.53		50	2177.13	169.15	34.00					11.00		40.00	510.81		
%	21		10	4	15	33	7				2		8			

現地調査한 22個 山林契의 燃料林造成實績은 表4와 같다. 整備된 것은 記錄上에는 없고 爲先 集計된 表4를 檢討하면 A) 山林契單位의 調査地 No. 2,16,17,은 過去 造林實績이 없음에도 撫育實績은 16 ha로 되어 있고 B) 10,12,11은 造林地보다도 撫育面積이 많으며 C) 肥培管理는 10,12, 11, 13,14에 集中實施되었으나 造林面積과 對比하면 甚한 不均衡이며 D) 燃料林 造成에 있어서도 里洞間에 甚한 不均衡을 이루고 있으며 19는 都市地區(晉州市)에 位置함에도 不拘하고 全體面積 510 ha의 23%인 117 ha가 集中造成되었으나 其實은 失敗에 가까웠고 一部 金氏 宗中山만 남아있는 實情이고

E) 里洞契 單位로 地域別로 甚한 偏重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集計된 總面積 510 ha中 조사契 No. 10,12,13,14, 15,19,22의 7개 山林契의 造林面積이 416 ha로 조사 區全體 510 ha의 80%을 차지하고 있다. F) 이것은 結局 戶當 一定面積의 燃料林 造成政策과는 너무나 떠러진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燃料林의 主樹種은 아까시나무이며 其外 리기다소나 무 오리나무等 極히 制限된 燃料樹種을 栽植 하였고 過去 造成된 燃料林의 殘跡을 쉽게 알 수가 있었고 筆地와 樹種別로 細分하여 精密調査하기에는 어려가지 與件이 不許하였다. 그 實態의 概略은(消滅面積을 表

V.의 集計面積 510 ha에 對한 一%로 表示함) A) 62년 以前에 造成된 것은 거의 消滅(108 ha, -21%), B) 조사 No. 1~9는 契長은 過去 燃料林의 造成事實조차 全然 모르고 있고 또 現場의 흔적도 없음(25 ha, -5%) (C) 64, 65년도 No. 19~22의 一部改植, 特用樹種 造林으로 20% 殘存(51 ha中 10ha 殘存 -8%) D) 73, 74년도 造林地는 完全함(51 ha+10%) E) 조사 No. 13, 14는 70% 成功, 成林地(81 ha-5%), F) 其外는 一部開墾, 特用樹의 造林, 他樹種 移改植되어 一部 흔적과 林緣에 帶狀으로 殘存(-40%), (G) 以上을 綜合하여 概略의 으로 推算하면 全體의 69~79% 即 70~80%가 燃料林地로서 消滅된 不足林地로 推計된다. 勿論 統計의 處理의 結果는 아니고 主觀의인 判斷에 不過함을 밝히며 앞으로 精密調査에 期待한다. ⑥ 其外 轉賣된 林地는 거의 林相이 變更 되었고, 小面積의 造成林地, 部落의 앞의山, 遠距離의 造林地일수록 消滅度는 甚하며 흔적조차 없는 곳도 있었으며, 砂防施工地等 法定制限林地의 隣接면토린은 잘 管理되고 있었다. ⑦ 全國의 一般의인 現狀이나 路邊 崩壞地(山비탈 林緣等)에 帶狀으로 成林된 아까시아를 볼 수 있으며 風致, 綠飼料, 蜜源樹木으로 重用되고 있으며 間或 點生, 散生하여 殘跡을 남기고 있는 他樹種에 比하여 아까시아는 亦時 優秀한 燃料樹種이라는 稱讚을 받으며 一般 山村民의 아까시아무 忌避性을 拂拭하도록 指導가 必要하다. 團狀의 殘存形態는 보기 어렵다.

⑧ 燃料林 指導費

燃料林의 造成 指導에는 山組가 直接擔當하고 있으며 其指導費는 事業費의 約 3% 内外이다(表 5.) 이것은 全國 組合當平均 1.05百萬元 정도이다.

⑨ 委託林(受託, 分收林)

委託林에 對하여 山聯에서 自體로 72년에 整備調査하였고 74년도에 再整備 調査한 結果는 表6.과 같다. 48%가 存續하고 있고 存續林地中의 79%는 燃料林으로 되어 있어 委託材의 管理는 一面 造林管理와 內實의 으

로는 燃料林의 管理에 歸着된다고 할 수 있다. 自體分析에 의하면 A) 整備의 內容은 74년도 재정비結果의 489 ha(表6의 512는 74신규계약 23千ha을 加算한 數字임)는 其 件數가 157,667件이며 面積比로 契約의 未備는 14%로 되어 있다. B) 契約廢棄地의 主原因은 用途 轉換地가 33%이며 其中 他用途重複이 25%로 가른 理由가 되고 있으며 內容無實地가 67%로 이 가운데 成林 失敗가 34% 證據不備가 26%로서 主因이 되어 있다. 또 C) 代執行 節次의 複雜性 때문에 山主와의 契約은 實際에 實効性이 疑問視되는 點이 많다. D) 慶南道 경우 法發効後 山主로 부터 單 한件의 費用辨償을 받은 事例가 없었다. E) 山林의 筆地가 細分되어 있고 零細 山主의 分散化와 不在山主의 往居移動, 轉賣, 手續費用, 手續의 複雜 등으로 辨償請求는 거의 포기 狀態이며, D) 實際로 造林命令의 發付, 代執行命令發付, 造林 實行報告 費用辨償命令 確認證書交付에 이르기까지 一連의 行政 및 法節次의 往復文書 傳達만 하여도 零細 筆地와 不在山主를 相對로 하여 複雜하기 이를 말할 수 없다. 制度의 簡素化와 特別措置가 切實히 要望된다.

⑩ 一線委託林의 實態 :

조사山林契 22개의 위략림의 集計는 表8과 같다. 一線契長은 燃料林에 對하여는 알고 있으나 委託林에 對하여는 거의 白紙이며 一部 宗中山을 分收契約한 山林을 잘 把握하고 있었다. 前記와 같이 委託林의 79%가 燃料林임에 비하여 이의 實態는 燃料林의 實態와 同樣相이 同一하다. 表7에 따르면, 里洞契內의 私有林面積과 對比하면 0.2%에서 53%까지의 不均衡을 이루고 있다. A) 全然 造成되지 않는 곳이 1契이고, B) 全私有林의 25%가 委託되었고 C) 40~50% 以上이 5개 契이고, D) 10%未滿이 6契이다. E) 따라서 契員의 管理能力, 林分의 位置 距離 등을 充分히 參酌하여 재정비가 要望된다. F) 一線契에 事業實態의 明細調査가 必要함.

⑪ 共同出役 등 : 74년도 기준 II地區의 9契에 90名,

표 5. 년도별 연료림조립 사업비 집행

년 도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지 도 비	비 고
	천ha	백만원	백만원	%
70	20	409	13	3.17
71	15	347	9	2.59
72	11	295	8	2.71
73	8	285	9	3.15
74	25	967	37	3.82 지도비 ha 당 약 1.5천원
75	35	2,424	73	3.01 지도비 ha 당 약 2천원
계	114	4,727	149	3.15

表 6. 위탁림 계약 실적과 정비조사사항

단위 :千ha

구분		74년말총누계	74년말존속누계	계약대비존속%	비고
계		1093	512	48	
분수용역별	조림관리별	349	191	55	'72정비 '74제정비조사 결과임
	조림관리별	414	138	33	
	관리별	20	43	—	
	조림별	129	82	64	
	관리별	151	58	38	
	채	1	0.7	—	
임종별	연료림		405	79	74존속 512에 대한 비율임
	간기수		95	19	
	유실수		3	0.5	
	속성수		6	1	
	특용수		3	0.5	

Ⅱ地區의 9契約에 69名을 調査하였다. A) 養苗作業에 Ⅲ地區의 1개契約에서 단 3.4日 出役하였고, B) 燃料林 造林에 Ⅲ地區의 5개契約에서 平均 5.8日식 일하였고, C) 一般造林에서는 Ⅱ地區의 1개契約 Ⅲ地區의 3개契約에서 1.5~6.8日 平均 3.2日을 日當 150圓을 받고 出役, D) 一般造林地의 下刈作業에 Ⅱ地區의 5契約에서 契約員 1日씩 일하였고 E) 엔로 및 시초채취에 Ⅱ地區의 9개 調査契約가 빠짐없이 28~50日 平均 41.4日 作業하여 소나무, 시초를 63~119점을 平均 90점을 얻었고 Ⅲ地區에서는 8개契約가 3~27.5日, 平均 7日 作業하여 7~30점 平均 6점의 소나무 아까시나무 오리나무의 엔로를 분배 받았다. F) Ⅱ의 奥地帶와 Ⅲ의 平野地帶의 差가 나타났다.

④ A) 病蟲害防除에는 Ⅱ地區의 4개 契約에서 0.4~1.5일 平均 0.9일 구제하였고 Ⅲ地區에서는 3개契約에서 0.4~2.5일 平均 1.3일 驅除에 從事하였다.

B) 山火防止를 爲한 監視 巡山에는 Ⅱ地區에서는 各契約 빠짐없이 12~35回 平均 25.9回 巡山 하였고 Ⅲ地區는 3개契約만이 1回式 巡山 하였다.

C) 技術指導는 主로 아궁이 改良에만 있었고 Ⅱ, Ⅲ地區에서 1~5회에 걸쳐 18契約가 모두 빠짐없이 있었으며 各契約 平均 2.4回이고 指導員은 郡과 面의 山林關係 公務員이 있고 組合員은 1回도 없었다. 기타의 技術指導는 全然 없었다.

表 7 위탁림(조사지의 집계)

조사번호	위탁림(A)		구역내사유림(B)	A/B
	건	ha	ha	%
1	1	1.00	504.57	0.2
2	11	28.85	326.76	9.0
3	9	104.82	287.54	36.0
4	3	213.40	415.87	51.0
5	7	321.28	655.74	48.0
6	2	32.00	421.74	7.6
7	3	27.20	141.84	19.0
8	6	152.29	283.83	53.0
9	2	35.44	179.97	19.7
10,12	17	36.25	194.41	18.6
11	21	33.54	84.72	39.6
13,14	2	3.00	369.36	0.8
15	16	68.00	273.50	24.9
16	7	87.00	767.44	11.3
17	6	12.50	397.90	0.3
18	0	0	73.09	0
19	2	35.44	153.18	23.0
20	36	204.58	390.26	52.0
21	9	127.64	460.61	28.0
22	6	83.20	255.68	32.5
계	166	1,635.43	6,498.17	25

6. 林野地 利用狀況(自給의 利用)

契約員은 대개 古來로부터 上着한農山村住民으로서 傳來의 慣行的 利用과 入山行爲 即 原野林地에 對한 自

給的 利用形態는 多樣하며 營農行爲와 또는 所得向上과 直結되어 그 行爲의 形態는 多樣하다. 그래서 主로 A) 山野시초 채취와 그 利用, B) 採取의 거리 C) 放牧의 形態, D) 入山の 形態, E) 副産物 利用의 樣想, F)

山地的 墓地設定等 林業外的 利用, G) 落葉의 採取, H) 林野地의 變動 等を 調査하였으나 여기에는 面數 關係上 省略하고 다만 落葉採取는 設問에도 나타나 있으나 調査契 18개中 Ⅲ地區의 4개契에서 自家山에서 採取하고 있다. 即 1~2km의 自家山에서 平均 28점, 2~3km의 自家山에서 38점, 平均 33점씩 採取하고 있음을 附記한다.

7. 考察 및 要約

1) 前記 意識의 構造에서 表示된바와 같이 契員은 山林契의 存立自體에 對하여 極히 否定的이며 山組는 組合費의 督促 徵收機關으로 認識하고 있다.

2) 林地에 對한 經濟的 效用性은 充分히 認定하고 있으며 山地의 保有乃至 擴大意識이 強하며 또 이들은 한결같이 自家經營을 願하며 現下의 山林施策에는 自意 判斷보다도 官의 主導에 의하여 參與하고 있으며 이들에 對한 參與意識의 啓發 自發的인 先導的 役割의 增大 指導 啓蒙策이 講究 補充 되어야 하겠다.

3) 山組는 自體生存에 단 汲汲하고 있으며 單位契에 對한 積極的 育成母體로서는 너무나 貧弱하나 創意性이 아쉽다. 契와 山組는 遊離되어 있으며 어떠한 使命感과 同質性에 對한 紐帶의 強化가 要望된다.

4) 山林契는 劃一的인 平面組織에서 脫皮하여 地帶別 契員의 業態 地域의 特性과 急速한 社會運作의 變化等を 考慮하여 都市圈等의 不實契는 再編整備하여 山村地域의 活動母體로서 確固한 意識體系의 確立이 一次的인 要件이다.

5) 山組, 契는 公法人體로서 名目的인 制度的인 保障이 있을뿐 現下의 政策의 優位施策의 遂行過程에서 大部分의 契는 다만 그의 一環으로 登記上의 名脈維持에 지나지 않은 組織體로 되어 있다.

6) 山組, 契의 主要任務인 委託林 燃料의 造成 管理는 그 失敗의 原因을 正確히 分析하여 微序한 再整備를 斷行할 것. 自體分析에 의하면 該當林地의 林相形質의 變更等 外面的把握에서 단 그 原因을 찾고 있으나

實로 失敗의 主因은 契員의 無關心과 放任等 人爲的인 作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7) 一次的으로는 單位母體로서 山組의 自立策이 모색되어야 하며 民主的 協同體가 基本인 山組의 組合長의 給與支給은 물론이며 手當制로 還元하고 組合長의 人件費節減과 事業의 擴大와 政策當局의 行政支援等으로 組合費 全額을 契에 完全 還元할 수 있는 方途를 講究함이 必要하며(林野稅로의 轉換等),

8) 가장 安全事業의 하나인 養苗事業을 더욱 擴大하고, 養苗協會 副産物等의 加工團體林業에 關連되는 모든 傍系團體와의 特殊會員 加入 乃至 連繫의 協助의 政策的 檢討가 있어야 한다.

業務의 分割(그 專門性을 살리)과 統合의 現實的 分析이 必要하다.

9) 人事管理面에서는 林業의 專門性을 度外視한 林業外的 作用을 排除하고 眞實한 山聯, 山組의 일꾼을 養成함이 緊要할 것 같다. 現組合의 人員은 業務面에서 볼때 過少한 人員은 아니며 傘下契의 보다 積極的인 管理가 要望된다.

10) 山組의 豫算은 恒常不安定하며 保護, 造林, 出役 管理의 組合 契에서 脫皮하여 將次 期待되는 社會 諸樣相의 變革에 順應할 수 있는 綿密하고도 確固한 方向設定이 必要할 것 같다.

11) 問題點은 山積하나 몇가지 提示하면 代執行에 따른 手續의 簡素化 林地의 零細 分散의 防止 最少分割單位의 設定, 山主協同의 具體化(山主의 出資組合式等) 全般的인 林業構造의 改善等 末端的 契 山組의 業務面의 檢討와 功過를 分析하면 特別法等의(林地法等) 制度措置와 既存制度의 補充等으로 劃期的인 變革의 政策이 現行施策과 並行되어야 할 것 같다.

12) 結局 契의 主體는 山主가 되어야 하며 非山主의 契員은 副次的 役割로 共同體의 任務에 같이 努力하여야 하겠다.

끝으로 本調査에 支援하여 주신 沈鍾燮會長님, 資料를 提供하여 주신 山聯 및 關連山林組合에 深深한 謝意를 表합니다.